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 훈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지역법제 연구 15-16-①-6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 훈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France**

**연구자 : 전 훈(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Jeon, Hoon**

2015. 9.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체대상 175개국 중 43위이며 연구 대상 국가인 프랑스는 26위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국가를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있는 프랑스는 공공 부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강한만큼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 요청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인접국가에 비해 부패 방지와 공공분야, 특히 공직에서의 청렴성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되어 왔음
- 종래 전통적인 공무원법상 의무규정과 형법상의 부패범죄에 대한 제재에서 유럽연합의 입법적 동향에 발맞추어 새로운 입법과 행정명령의 제정을 통해 반부패와 공직투명성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나서고 있음
- 실제상 법무부 소속인 중앙부페방지처와 같은 범(凡)정부적 부페방지 기구를 설치하여 공직의 부페방지와 공직생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등사무국의 신설과 같은 부페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의 공직자의 의무와 부패행위 방지에 대한 최근까지의 입법의 변화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의 공직자 부패행위의 방지와 투명한 공직 사회형성을 위한 제도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II.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프랑스의 실정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공직자의 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부패방지체계를 검토하는데 있음
- 프랑스의 부패방지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법률, 형법, 부패방지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공직투명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강학상은 물론 실무상으로도 공직부패행위는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어떤 행태를 통해 어떤 행위를 달성하거나 지연 혹은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안 또는 수뢰 및 양도받는 직접 혹은 간접적 행위 모두를 지칭하며 프랑스 형법은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 행위로 구분하고 있음
- 프랑스 형법은 특정인이 공권력의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권한남용을 경우를 적극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반면에 공직자가 개인적 의사에 준거해 청탁을 이행하는 경우

소극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음(형법 제433-1조; 제432-11조)

- 프랑스의 고유한 공직자 부패행위 방지에 있어 1993년 부패방지법 시행 데크레로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중앙부페방지처(SCPC)’가 부패감시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음
- 중앙부페방지처는 일정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활동, 부페관련 정보의 종합화 업무 수행과 사법당국과의 업무협조를 임무로 함
- 그밖에도 공직윤리위원회와 공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 공화국재판소 등이 부페방지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퇴직 공직자의 부페방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취업은 가능하나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직윤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도록 함
- 공직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 및 겸직의 예외 사항에 관하여 심사함
- 공직자의 부페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적극적 부페행위와 소극적 부페행위의 차별 없이 처벌되며 민법 및 가족법이 금지하는 공민권 금지, 판결공표, 청탁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 금지 등의 부가형이 가능하며, 공직 퇴직 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영리행위자 처벌 규정이 있음.

III. 기대효과

-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 관련 법제의 체계 및 그 주요내용과 부패방지 추진체계에 관한 비교법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공직부패방지의 법체계 구성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가능하게 함
- 프랑스의 부패방지에 관한 지속적인 입법 노력과정에 나타난 국제협력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공직부패행위 처벌을 위한 형사시스템 운용에 참고할 수 있음
- 글로벌해지고 있는 부패행위에 대한 대처를 위한 부패방지 조직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프랑스의 중앙부패방지처와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반부패 감시기구의 제도적 운영은 우리의 공직 투명성과 부패예방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주제어 : 공직분야 부패, 공직투명성에 관한 법률, 적극적/소극적 부패행위, 부패방지, 중앙부패방지처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is comparative study is to know the french legal system of anti-corruption and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 Corruption is a result, a symptom of bad governance and maladministration. Korea/France ranked 43rd/26th among 175 countries on the 2014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report issu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 France needs more effort to ensure public sector ethics and prevent any form of corruption.
- In the interest of anti-corruption in public sector and in private sector, France established several special acts and specialized institutes within legislative trends for anti-corruption politics.

II . Main Contents

- The pro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system of french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ve bodies about anti-corruption.

- Corruption is distinguished between two types : passive and active (Art. 432-11 and 433-1 of the Criminal Code).
- According to the law of 1993, the Central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s the monitoring center and its principal mission is to detect and to prevent of facts of corruption which is related to public officers.
- High Authority for Transparency in Public Life was established at the end of 2013 in order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french public officials.
- Individuals who convicted of active or passive corruption and influence-peddling in the public sector may be sentenced by principal penalties and supplementary penalties.
- In principle, the reemployment of retired public officials is accepted but additional business is prohibited.
- The Ethics Commission performs a function to examine the exception cases about reemployment and additional business for public officials.
- Corruption and influence-peddling of French public officials are regulated by the French Criminal Code.

III.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avorable for the transparency of the public life in Korea.
-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ransparency of public life in Korea by means of comparing with french legal system and institutional system of anti-corruption.
- In order to find a effective solution on problem related to corruption, it may be useful to make a direction of criminal policy in Korea such as strengthening practical measures against corruption by legislative reform in France.
- Anti-corruption and its administrative body system will be an important theme for research. Therefore, the study about french institutes for anti-corruption may be helpful to improve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life in Korea.

 Key Words : corruption in public sector, transparency of public life Law, active/passive corruption, anti-corruption, Central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I. 연구의 필요성	15
II. 연구의 목적	18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 2 장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관련 법제	27
제 1 절 개 요	27
제 2 절 관련 법률	27
I.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법률	27
II. 형 법	30
III. 부패방지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31
IV. 공직 투명성에 관한 법률	33
V.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	34
VI. 콩공조달법상의 투명성 보장	39
제 3 장 공직자의 부패행위 고찰	41
제 1 절 부패행위의 개념	41
I. 부패행위	41

II. 영향력의 행사 (Trafic d'influence)	42
제 2 절 부패행위자의 범위	43
 제 4 장 공직자 부패방지 추진체계	47
제 1 절 부패방지기관	47
I. 중앙부패방지처	47
II. 공직윤리위원회	50
III. 공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	51
IV. 공화국재판소	53
 제 2 절 퇴직 공직자 및 겸직에 따른 부패행위의 방지	54
I. 퇴직 공직자의 부패방지	54
II. 공직자의 겸직 금지	56
 제 5 장 프랑스의 부패방지 처벌	63
제 1 절 개요	63
제 2 절 부패행위자의 처벌	64
I. 부패행위자의 처벌	64
II. 퇴직 후 영리 행위자의 처벌	68
 제 6 장 결론	71
제 1 절 연구의 요약	71
제 2 절 시사점	72
 참고문헌	75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8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연구의 필요성

부패의 문제는 특정의 한 나라의 정치경제나 행정의 스캔들에 국한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나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의 문제는 다른 국가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부패방지와 공공임무의 수행의 투명은 국가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그동안 정부는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에 주소를 둔 NGO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각국의 부패 인지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지지수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한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해 각 국의 부패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로 순위를 매긴 것”을 말하는데, 2013년 우리나라의 부패순위는 176개국 가운데 45위로서 4년 연속 하락했다.²⁾ 지난 2014년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 조사대상국 (175개국) 중 43위로 2010년 (39위) 이후 연속 하락과 정체를 지속하고 있으며³⁾ OECD 가입 34개국의 평균점수인 68.6점에 비해 13.6점이 낮은 점수로 하위권 (27위)에 머무르고 있다.⁴⁾

1) 윤광재, “각국 부패현황 및 대책: 유럽사례 -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 189면.

2) 유원기, “공직 윤리와 공직자의 역할 : 공직윤리 왜 필요한가”, 공공정책, 2013. 7, 11면.

3)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라트비아, 몰타와 같은 순위인 43위에 위치해 있다.

4) 유원기, 앞의 논문, 11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제적 비교지수인 부패인식지수의 수준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⁵⁾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3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에서 뇌물방지협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4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등급으로 분류되었다.⁶⁾

부패 또는 부패행위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돋는 일체의 일탈행위(공직자부패방지 가이드, 국가청렴위원회, 2007)로서, 부패의 발생영역 또는 독특한 행위양태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⁷⁾

부패, 특히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구별

5) 조규범, “국가청렴도 실태와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 입법조사처, 2014.1.6, 1면.

6) 서원석,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4, 2면: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은 반부패기구 검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사례가 나타났고, 해외에서 뇌물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수사·처벌하는 법제가 부족하며, 기업의 내부고발자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148개국 중 25위로 전년대비 6단계 하락하였고, 정책결정의 투명성, 기업 경영윤리 등의 순위가 하락하였다. 2013년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회계운영 특별감사에서도 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6억 47백만원), 회계운영 위반 사항 451건등이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위반 사례는 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횡·유용 3건,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 4건,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유용 2건, 일상경비·기금 등 횡·유용 2건,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의 원인은 우리사회의 불감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패사범의 솜방망이 처벌과 법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저하로 인해 부패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7) 현재 한국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상 “부패행위”란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 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없이 모든 국가가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권의 교체될 때마다 혹은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방지 내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부파행위의 추상성, 적용규범의 다원화, 부파행위 조사기구의 미비, 부파 예방의 한계와 처벌(규제)의 단순성, 신고자 보호수단의 부족, 공직윤리 및 부파행위의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동안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지 못한 이유도 있다.

공직부파 종합대책으로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대상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수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쟁점에 대한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절차가 지지부진되다가 4년이 지난 3월 4일 쟁점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로서 국회 통과가 이루어졌다. 이 법의 법안은 제안 당시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회복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현행법 체계만으로는 은밀화·고도화 되어가는 공직사회의 부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마련됨에 따라⁸⁾ 2011년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장이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8) 이해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논의에 관하여”,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4.7.14., 1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안(초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하였으나, 관련 법안의 위헌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와중에 국회에서는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며, 부정청탁행위, 이해충돌행위 등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의원안(김영주의원안, 이상민의원안)이 발의 되었다. 그 후 권의위가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법안(초안)은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재의 유형과 대상 등이 일부 수정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정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⁹⁾

이러한 첨예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개별법적 논의가 아닌 법 전반적인 차원에서 체계통합적인 시각으로 쟁점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II.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직자의 윤리와 개별 부패(금지)행위 금지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로서 프랑스의 경우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투명한 공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축적과 프랑스의 제도의 시사점을 통해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발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국인 프랑스의 경우 1789년 혁명을 통하여 근대 국가를 형성한 나라로, 절대왕정 시기에 왕족과 귀족들의 부패가 심해질 정도로 심해져서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났고, 그 결과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탄생한 만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은 국가이다.¹⁰⁾ 그러나 역

9) 홍완식,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 연구원, 2014, 29면 이하 참고.

10) 전학선, “프랑스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공법학연구

설적으로 프랑스에서 공직 담당자의 부정부패는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프랑스는 국제투명성 인식 조사에서 이웃국가인 독일(12위), 영국(14위)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26위를 기록하고 있다.¹¹⁾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 분	덴마크	뉴질랜드	독 일	영 국	프랑스	한 국
2014	1위 (92점)	2위 (91점)	12위 (79점)	14위 (78점)	26위 (69점)	43위 (55점)
2013	1위 (91점)	2위 (91점)	12위 (78점)	14위 (76점)	22위 (71점)	46위 (55점)

그리고 프랑스의 고위 공직자의 뇌물관련 부패가 제도의 미비라 기보다는 그랑제꼴 (Grandes Ecoles) 중심의 프랑스 엘리트사회의 폐쇄성에 따라서 프랑스 정치 및 경제 지도층에 대한 상호감시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

프랑스의 부패와 관련된 문제는 권력남용에 의하여 석유산업, 항공, 군수산업, 건축과 공공사업 부문에서 부패의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독점적인 상황에서 업무

제9권 제 3호, 101면 : 프랑스 부패의 특징은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프랑스 정책에 있어서 부패가 나타나고 있다. 그 요인들은 세 가지 제도적인 면인데, 공공기관의 통제의 나약함, 국가 차원에서의 정치적·행정적 그리고 경제적 권력에 대한 전통적인 집중, 그리고 1982년 분권화(décentralisation) 이후의 공공관리의 명확한 부문의 지방화이다. 이 세 가지 요인들 모두 공적 자금의 남용과 오용에 대하여 호의적인 환경들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주제적 전통,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의 부재를 포함하는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다.

11) <http://www.transparency.org/cpi2013/press> (검색일자:2015년 8월 10일)

12) 족벌주의는 프랑스에서는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굳어져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지는 꼬집는다. 프랑스에서는 에콜 폴리테크닉과 국립행정학교(ENA) 파리 고등사범학교 등 소수 명문대 출신이 정관계 요직과 주요 대기업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이 무색할 정도로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가 만연해 있다 보니 공직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 친지를 돋거나 힘써주는 것이 인간적인 면모로 비치기도 한다. (신동아 199년 5월호, “도전받는 프랑스 관용주의- 국제화가 프랑스의 체질을 바꿀까?”)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에 의해 공공계약의 산출이 결정되는데 이들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를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¹³⁾

지난 2000년에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의 위원장이었던 롤랑 뒤마 (Roland DUMAS)가 외무부 장관 임기 중 타이완에 프랑스 군함을 판매하면서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원장직을 사임한 예는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다고 본다.¹⁴⁾

프랑스 정부는 부정부패 사례 및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¹⁵⁾가 수시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시도해 왔다. 1992년 사회당의 국회의원들과 지방 의회 의원들의 가짜영수증사건이 보도된 후 그해 4월 취임한 베레고부아 (Pierre Eugène Bérégovoy)총리에 의해 1993년 ‘부패방지와 경제 및 공공절차상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 의해 ‘중앙부패방지처’와 ‘공직윤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상기 제 법률들에 대한 법전(Code)화 작업을 통하여 정치자금, 선거와 관련된 법령 규정들을 선거법(Code électoral)에 통합하여 명시하고 있다.¹⁶⁾ 프랑스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3) 전학선, 앞의 논문, 102면 참고.

14) 롤랑 뒤마는 헌법재판소장직에서 사임하였고, 프랑스 검찰은 롤랑 뒤마에게 징역 2년에 2백50만 프랑의 벌금을 구형하였지만 롤랑뒤마는 항소심에서 2심에서 무죄 방면되었다.

15) 부정부패와 관련한 프랑스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서는 Shailendrasingh LEELEEA et Christophe ROQUILLY, *Lutte anti-corruption: Gestion des risques et compliance*, Lamy, 2013, p.19 이하 참고.

16) 프랑스 정치자금과 관련 법제에 대하여, 전학선, 프랑스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7면 이하 참고.

- 프랑스 정치자금과 관련된 주요법률:

*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관한 조직법률(*Loi organique n°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선거비용제한 및 정치자금정화에 관한 법률(*Loi n°90-55 du 15 janvier 1990 relative*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제13조에 “공적 강제력을 유지하고 공공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이래로 평등과 경제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회계약의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경제에 관한 부정부패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공적 부문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¹⁷⁾과 조세범죄와 대형 금융경제범죄에 관한 2013년 12월 6일 법률¹⁸⁾로 공공부문과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à la limitation des dépenses électorales et à la clarification du financement des activités politiques)

- *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자금에 관한 조직법률(Loi organique n°90-383 du 10 mai 1990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campagne en vue de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de celle des députés)
 - * 선거에 관한 조항들을 해외영토와 마이요트 지방에 확장하기 위한 법률(Loi n°92-556 du 25 juin 1992 portant extension aux territoires d'outre-mer et à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Mayotte de diverses dispositions intervenues en matière électorale)
 - *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Loi n°93-11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 *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률(Loi organique n°95-63 du 19 janv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e patrimoine des membres du Parlement et aux incompatibilités applicables aux membres du Parlement et à ceux du Conseil constitutionnel)
 -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Loi n°95-6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 * 정부위원들과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Loi n°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 * 정치자금투명화를 위한 위원회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을 수정하는 법률 (Loi n°96-5 du 4 janvier 1996 modifiant la loi n°88-227 relative à la commission pour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후보자와 재정대리인의 겸직 금지에 관한 법률(Loi n°96-300 du 10 avril 1996 tendant à préciser la portée de l'incompatibilité entre la situation de candidat et la fonction de membre d'une 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 ou de mandataire financier)
- 17)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18) Loi n° 2013-1117 du 6 décembre 201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ude fiscale et la grande délinquance économique et financière

이와 더불어 프랑스는 국제적으로도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차원에서의 유럽위원회(Conseil d'Europe)의 부패에 관한 형사조약 (1998년 11월 4일 채택, Convention pénale sur la corruption)¹⁹⁾과 민사조약 (1999년 11월 4일 채택, Convention civile sur la corruption)²⁰⁾의 채택 및 유럽위원회에 의해 1999년 설립된 부패방지에 관하여 조약가입국의 부패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국가간 연합(Groupe d'Etats contre la corruption, GRECO)²¹⁾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또한 OECD 국제 상거래상의 뇌물방지협약 (Convention sur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d'agents publics étrangers dans les transactions commerciales internationales)²²⁾이 1999년 5월 25일 채택되었고, 협약 집행을 위한 프랑스 국내법이 2000년 7월 31일에 공표되었다. 부패수사에서 각국이 협조하고, 부패로 해외에 은닉되었거나 유출된 재산을 국제적으로 공조수사를 통해 환수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감시기구의 설립,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부패감시기구 설치를 통하여 선거와 정치자금, 기업경영 등에서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부패방지협약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contre la corruption, 2003년 10월 31일 체결)에 가입하면서 2005년 7월 4일 국내법으로 제정되었다.²³⁾

19) <http://conventions.coe.int/Treaty/FR/Treaties/Html/173.htm> (검색일자:2015년 8월 10일)

20) <http://conventions.coe.int/Treaty/FR/Treaties/Html/174.htm> (검색일자:2015년 8월 10일)

21)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default_FR.asp? (검색일자:2015년 8월 10일)

22) 안상욱, “OECD 뇌물방지협약과 프랑스 정책”,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참고: OECD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경우도 1998년 12월 28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법률 제5588호로 제정·공포하였다. 1999년 2월 15일 법률이 발효되었다. 반면에 프랑스는 미국, 독일과 같은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에 비해서도 관련분야의 법률조치에서 늦은 편이었다. 프랑스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를 승인하는 법안이 1999년 5월 25일 채택되었고, OECD 뇌물방지협약 집행을 위한 국내법이 2000년 7월 31일에나 공표되어서, 2000년 9월 29일에 발효되었다.

23) Loi n° 2005-743 du 4 juillet 2005 autorisant la ratification de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contre la corruption

또한 이와 같은 부패방지관련 국제협약과 유럽협약들의 영향으로 이를 프랑스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졌는데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유럽차원의 부패방지 조치와 협력하는 프랑스 정부의 움직임을 고찰하는데 있다.

부패에 관한 처벌조항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또한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프랑스는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법(Code pénal)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특정인이 공권력의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권한 남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능동적 부패 (L.433-1), 공직자가 개인적 의사에 준거해 청탁을 이행하는 경우를 수동적 부패 (L.432-11)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과 임용직 공무원을 구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직제 하에 있는 중앙부패방지처의 지속적 감시활동과 부패와 관련한 정보의 종합화 업무 수행²⁴⁾, 사법당국과의 업무 협력 등으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계속적 노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 및 그 방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의 중점 연구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은 공직부패와 방지에 관한 선진 8개국의 비교법 연구를 기획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각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책임자들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24) 중앙부패방지처에서 발간하는 연간보고서 및 부패로 의심되는 자금의 감시에 관한 가이드북 (Guide d'aide à la détection des opérations financières susceptibles d'être liées à la corruption)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공동연구진 >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소속)
1	캐나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현희 (한국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나채준 (한국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영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경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규환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5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장원규 (한국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6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 훈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7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배성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 법제와 다양한 사항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관련 법제 및 추진체계 등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하여 법적 체계와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관련 법제에 관한 개괄적 검토를 통해(제2장), 프랑스에서 다루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자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제3장).

다만 본 연구보고서에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 행위에 대한 사례를 전부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가급적 간단하게라도 언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부패행위의 척결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책실현의 의지를 구현하는 추진체계, 즉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페방지의 추진체계(제4장)와 부페방지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제5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 공직자 부페행위에 대한 연구의 요약과 동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제5장).

제 2 장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관련 법제

제 1 절 개 요

프랑스의 공직자와 공직자의 부패에 관련한 법률은 일반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분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⁵⁾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에 관한 법제는 공직자의 분류 및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직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이 공무원의 국민의 공복(公僕)에 관한 내용을 헌법 명문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은 공직수행의 청렴성과 부패금지에 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 형법상의 부패에 관한 법률조항 그리고 공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형법은 공직자 부패와 그 방지에 대하여 부패행위의 개념과 부패행위의 구별을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2장에서는 연구에서 프랑스 공직자 부패관련 기구의 설치에 관한 입법체계는 부페방지기구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직법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하기로 한다.

제 2 절 관련 법률

I .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법률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의무는 1983년 제정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 부패와 관련하여

25) Jean-Marc SAUVE, “La prevention des conflits d'intérêts et l'alerte éthique”, AJDA 2014, p.2249: *des textes multiples (peut-être trop), sectoriels et généraux*

일렬의 사건에서 “공무원의 윤리와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 검토 중에 있기에 동 법안의 체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1.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프랑스에서 공직자 윤리 및 부패와 관련하여 일반적 금지규정을 명시한 예로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이 있다. 이 법률은 행정부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의료직 공무원에 적용되며²⁶⁾ 제 4장에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일정한 공직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개인 영리행위에 대한 직업의 제한되며 (제25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제26조),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의 요구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제27조).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급자이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지만 그 명령이 불법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지 않다 (제28조).²⁷⁾

26) 강홍진, “프랑스 공무원의 준수 의무와 제재 규정”, 최신 외국 법제 정보, 한국법제 연구원, 2009년 7월, 21면 이하 참고 : 동법 (제 1장, 1~5조)의하여 공무원은 일반공무원,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정부공무원 및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크게 분류된다. 검사 및 군인의 경우 공무원의 특별지위를 규정한 법의 지배를 받는다. 프랑스 공무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프랑스 국적 소유, 프랑스 법률의 적용대상, 공무수행에 적합한 사법기록의 소유, 공공서비스법에서 규정한 조건의 충족 및 장애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 가맹국의 국민으로서 상기 조건을 충족한 개인도 프랑스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주권행사를 위한 공무행위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독점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관련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채용될 수 없다. 국가, 지방, 의료직 공무원의 관한 법률로는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Loi n° 84-53 du 26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e; Loi n° 86-33 du 9 janvier 1986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hospitalière*.

27) 명백히 상급자의 명령이 불법인 경우 및 공익에 반하는 것일 경우 복종의 의무를

2. 공무원의 윤리와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안)

프랑스 정부는 1983년 공무원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최고 행정법원(Conseil d'Etat)의 판결로 인정된 위법 또는 공익에 반하는 내용에 대한 공무원의 명령복종의무 거부²⁸⁾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 윤리와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 déontologie et aux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²⁹⁾ 2013년 7월 13일 발의 되었고, 이 법안에 대해 2015년 6월 17일 현재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논의 중에 있다.²⁹⁾ 동 법안의 체계는 아래와 같다.

< 공무원의 윤리와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체계 >

I.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 윤리와 이해충돌 (1조~5조)
2. 겸직에 관한 사항 (6조, 7조)
3. 공직윤리위원회 (8조, 9조)
4. 행정 및 금융을 담당하는 재판관에 대한 사항 (10조~17조)

II.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현대화

1. 공무원의 유동성 (18조~24조)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 법원의 판단 (Conseil d'Etat, 10 novembre 1944, Sieur Langneur, Rec. p.248)²⁹⁾이다.

28) 당 법률안에서 1조에서 공무수행에서의 공정, 성실, 품위유지의 의무 (le devoir d'exercer ses fonctions avec impartialité, probité et dignité), 공무원의 중립성의 의무 (les obligations de neutralité), 정교분리 원칙의 존중 (le respect du principe de laïcité)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요구하고 있다.

29) 2015년 6월 11일 공세이데파 (Conseil d'Etat)로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검토의 경우 <http://www.conseil-etat.fr/Decisions-Avis-Publications/Avis/Selection-des-avis-faisant-l-objet-d-une-communication-particuliere/Deontologie-droits-et-obligations-des-fonctionnaires>. 그리고 2013년 발의된 법률안과 2015년 장관회의를 위해 수정된 법률안은 http://www.fonction-publique.gouv.fr/files/files/statut_et_remunerations/statut_general/pdf/deontologie-projet-de-loi.pdf에서 참고 (검색일자: 2015년 8월 10일).

- 2. 공무원과 그 가족의 실질적 보호 강화 (25조, 26조)
- 3. 공무원 규율 보장의 현대화 (27조, 28조)

III. 공공 고용의 모범

- 1. 업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 (29조~31조)
- 2. 비정규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32조~39조)
- 3. 공직사회에서의 소통 증진 (40조, 41조)

IV. 기타

- 1. 공무원에 대한 기타규정 (42조~44조)
- 2. 행정 및 금융 재판에 대한 기타규정 (45조~58조)
- 3. 최종 규정사항 (59조)

II. 형 법

부패행위는 공적 혹은 사적으로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어떤 행태를 통해 어떤 행위를 달성하거나 자연 혹은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금품을 요구/제안 또는 수뢰/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패행위는 직접 혹은 간접적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부패와 관련한 프랑스의 형법규정은 형법전(Code pénal) 제4권: 민족, 국가 그리고 공공의 평화에 반하는 범죄(Livre IV: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a nation, l'Etat et la paix publique)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7월 30일, 프랑스는 1997년 채택된 유럽공동체 공무원 또는 회원국의 공무원에 대한 부패척결에 관한 협약³⁰⁾의 영향으로 부패 억제에 관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³¹⁾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유럽연합의 공직자의 부패 억제를 위한

30) Convention pour combattre la corruption impliquant des fonctionnaires communautaires ou des fonctionnaires des Etats membres

31) Loi n° 2000-595 du 30 juin 2000 modifiant le code pénal e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사항과 부패방지를 위한 회원국 간의 법적 협력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의 목적 실현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007년 부패행위 억제에 관한 법률³²⁾을 통해 부패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형법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부패에 대해 구별하고³³⁾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형법상 공직자의 부패행위금지와 관련하여 국내 공직자, 사법 공직자, 해외 및 국제기구 공직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I. 부패방지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와 경제 및 공공절차상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1993년 1월 29일 법률 제93-232호)³⁴⁾에 의한 중앙부패방지처 설치에 관한 1993년 2월 22일 시행령³⁵⁾에 의해 중앙부패방지처(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가 설치되었다. 상기 법률 제1조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보 종합화와 공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사인에 의해 일어나는 적극적,

32) Loi n° 2007-1598 du 13 novembre 200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33) 프랑스는 1993년 형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형사책임 규정을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2004년 3월 9일 법률 (Loi n° 2004-204 du 9 mars 2004 portant adaptation de la justice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개정으로 모든 범죄로 법인의 형사상 책임을 확대하였다. 프랑스가 법인의 형사책임규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인 법인의 범죄임에도 사실상 면책이 이루어져왔던 현실을 고려하고, 법인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에 상응한 책임 부과의 필요가 있으며, 부패 범죄의 경우 기업 조직 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고위직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기관을 통한 법인 고유의 범죄의사, 형벌능력(권리폐지, 제한, 압류 등)이 있으므로 형사법 이론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도 그 배경이다. (김종민, “프랑스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 개혁에 관한 소고”, 법조 2014, 12, vol. 699, 212면)

34)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35) Décret n°93-232 du 22 février 1993 relatif au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institué par la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소극적 부패행위 및 수뢰행위의 방지에 대해 법무부 직제 하에 중앙부패 방지처가 (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앙부패방지처 설치에 관한 시행령 >

제 1 조

1993년 1월 29일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중앙부패방지처장과 동 기관의 다른 구성원은 시행령에 따라 임명되며 임기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패방지처장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임명되는 사무처장의 보조를 받는다.

제 2 조(2013년 10월 18일 데크레 제2013-938호에 의해 개정)

아래 기관은 1993년 1월 29일 법률 제1조 제3항에 의한 중앙부패방지처에 대하여 의견(Avis)을 요청할 수 있다:

1. 각 부처 ;
2. 프레페³⁶⁾ ;
3. 회계원장 ;
4.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장 ;
5. 선거운동경비와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위원장 ;
6. 금융감독원(AMF)³⁷⁾장 ;
7. 재정거래청[조달청]장 ;
8. 부처합동거래조사처장 ;
9. 국가소속 감사/심사기구(처)장 ;
10. 국가 통제 및 감독 대상기관의 장 ;
11. 국영공기업의 장 ;
12. 회계감사 및 통제과년 부서장 ;
13. 레지옹, 코르스(Corse) 집행기관, 데파트망, 코뮌, 자치단체연합체 및 기타 지방영조물의 장 ;
14. 공공서비스 수탁 민간기구의 장

36) 프랑스의 경우 일반지방행정관청으로 프레펙투르(le préfecture)를 설치하고 그 장인 프레페(le préfet)를 중앙에서 임명하여 파견하고 있다.

37) 2003년 금융안전법(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6호) 제정으로 설치된 독립행

제 3 조

중앙부패방지처는 매년 마다 특기할만한 성질을 가진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제안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중앙부패방지처는)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법무부장관은 이 데크레의 시행업무를 수행하며 프랑스 정부의 관보에 게재를 해야한다.

IV. 공직 투명성에 관한 법률

공직 생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은 현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2012년 논란이 된 제롬 카우작(Jérôme CAHUZAC) 예산부장관의 비밀계좌 등의 정치-경제 영역의 부정부패사건으로 공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³⁸⁾의 제정이 가속화되었다.³⁹⁾ 공직 생활 투명성에 관한 법률(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 2013-907호⁴⁰⁾, 2013년 10월 11일 조직법률 제2013-906호⁴¹⁾)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프랑스 공직 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의 규정과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정청(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으로 종전의 증권거래위원회(COB, 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와 금융감독위원회(CDGF, Conseil de discipline de la gestion financière) 및 금융위원회(Conseil des marchés financiers)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38) 장관의 이름을 따 Cahuzac법이라고도 한다.

39) L'express지 2013년 9월 17일 기사[Transparence: après des mois de discussions, l'Assemblée va adopter la loi Cahuzac] 내용의 일부이다.

http://www.lexpress.fr/actualite/politique/transparence-apres-des-mois-de-discussions-l-assemblee-va-adopter-la-loi-cahuzac_1279279.html#OTH6UkxpvlbbfTK3.99 (검색일자:2015년 8월 30일)

40)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41) Loi organique n° 2013-906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 공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의 체계 >

I . 공직 생활에서의 이해충돌방지와 투명성

1. 절제의무
2. 신고의무
3. 정치활동의 자금조달
4. 공직 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
5. 의회임기 중 공직을 수행하는자의 지위
6. 내부고발자의 보호

II . 쳐별규정

III . 최종규정

V .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투명성기구(TI)의 보고서(2004)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를 “법규와 규칙에 반하는 중대한 증거에 대한 정보를 알거나 활동영역에서 직업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알고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⁴²⁾

아울러 동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에 대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⁴³⁾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사적영역에서의 내부고발자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Code du travail, 2007년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그동안 공적영역에서는 충분히 입법화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현재 프랑스의 내부자고발 보호에 관한 조치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뿐 아니라 최근 입법적 노력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공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2013년)을 제정하면서 내부고발자의

42) Lettre d'information de Transparency-International (France), n° 23, octobre 2004,
http://www.transparency-france.org/e_upload/pdf/lit23.pdf (검색일자:2015년 8월10일)

43) Lettre d'information de Transparency-International (France), n° 23, octobre 2004. p.4.

보호에 관한 법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⁴⁴⁾

1. 형사소송법상 신고의무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0조 2항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 또는 공무원 모두는 직무상 취득한 범죄와 위법 사실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구두진술과 행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공화국 검찰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하며 사법관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상기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공무원상 취득한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특별 처벌규정의 부재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⁴⁵⁾ 사적영역에서는 위 형사소송법상의 규정과 같은 신고의무가 부재하지만 200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명확해졌다.⁴⁶⁾

2. 이해충돌상황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전기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사적영역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내부 신고자(고발자) 보호조치는 2007년 11월 13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⁴⁷⁾ 동법에 따라 노동법 법률조항 제1161-1조는 직무수행중 발견한 부패 행위를 선의로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 고발한 피고용인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44) Le rôle du SCPC et de la HATVP en matière de lanceurs d'alerte”, Colloque TI France - Fondation Sciences citoyennes: Lanceurs d'alerte. La sécurisation des canaux et des procédures, Assemblée Nationale, 4 février 2015, p.2.

45) “Le rôle du SCPC et de la HATVP en matière de lanceurs d'alerte”, Colloque TI France - Fondation Sciences citoyennes: Lanceurs d'alerte. La sécurisation des canaux et des procédures, Assemblée Nationale, 4 février 2015, p.2.

46) 노동법 제 1132-3조, 1132-4조, 1152-2조, 1152-3조, 1153-2조, 1153-3조, 1161-1조

47) 김종민, 앞의 논문, 217면 이하.

이후 공적영역에서도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공직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제2013-907호)⁴⁸⁾에서 이해충돌 (conflit d'intérêts)의 개념을 최초로 명문화하였다.⁴⁹⁾ 당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익 간에 또는 공익과 사익간의 모든 충돌상황을 말하며 이는 공평하고 독립적 임무 수행과 활동목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동 법률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과 관련해 선의로 위법 사실을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에 형법 제226-10조는 악의의 고발자에 대해 중상모략 목적의 고발자에 대해 같이 5년 이하의 구금 및 45,000유로의 벌금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2013년 법률에 따라 노동법(Code du travail) 법률조항 제1132-3-3조가 신설되었다. 동 조는 “누구도 직무수행 중 발견한 범죄행위를 선의로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실로 인해 취업절차 또는 기업의 연수 또는 직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어떤 급여생활자도 징계, 해고 또는 특히 급여, 직무, 교육이나 승진, 재계약상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 대상 범위를 모든 급여 생활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행위의 범위를 고용주 또는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 대한 폭로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입증책임에 있어 전환규정을 둘으로써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언은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의 입증책임을 상대방이 지도록 하였다.

상기 2013년 법률에 배치되는 모든 종전의 법률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형사소송법은 내부고발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48)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49)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63면: 법률 제정 전인 사르코지 정부 하에서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례로 페롤(Pérol) 사건과 워르스-베탕쿠르(Woerth-Bettencourt)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산하의 중앙부폐방지처에 요청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요청신청을 받은 검찰은 반드시 중앙부폐방지처에 대하여 연락을 해야 한다.⁵⁰⁾

< 표1 - 내부고발자에 관한 프랑스 법령 >

법률	적용영역	적용범위	보호	신고자 (사인, 기관)
부폐방지에 관한 2007년 11월 13일 법률 (노동법 L.1161-1창설)	사적영역	부폐사실 (선행사실/ 보복)	- 채용, 인턴 - 연수 - 처벌 - 해직 - 차별	- 고용주 - 사법기관 - 행정기관
약물과 건강용품의 안전성 강화에 관 한 2011년 12월 29일 법률 (공중 보건법 L.5312-4-2 창설)	모든영역	보건안정성에 관한 사실 중 공중보건법 L.531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물품	- 채용, 인턴 - 연수 - 처벌 - 차별 탈루:해직	- 고용주 - 사법기관 - 행정기관
건강과 환경분야의 전문가의 독립성과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2013년 4월 16일 법률 (공중 보건법 L.1351-1-1 창설)	모든영역	공중보건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험에 관련한 사실	- 채용, 인턴 - 연수 - 처벌 - 차별 탈루:해직	- 형사소송법 제40조와 제60-1조에 명시된 제한적 의무 - 형사소송법 제40-6조에 명시된 기관: 중앙부폐방지처

50) 형사소송법 제 40-6조.

제 2 장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관련 법제

법 룰	적용영역	적용범위	보 호	신고자 (사인, 기관)
공직생활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5 조)	모든 영역	정부공무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서비스의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	- 채용, 인턴 - 연수 - 처벌 - 해직 - 차별	- 고용주 - 기관의 윤리 담당부서 - 공인된 반부패 단체 - 공직생활 투명 성을 위한 고등 사무국과 사법 당국 - 행정기관
조세범죄와 대형 금융경제범죄에 관한 2013년 12월 6일 법률	공적 영역 및 사적 영역	범죄	- 채용, 인턴, 연수, 처벌, 해고, 임용, 차별 등 사적 영 역 의 탈루: 행위의 무효로 재판에 의함 공적 영역의 탈루: 계약 연장불가	- 형사소송법 제40조와 제60-1조에 명시된 제한적 의무 - 형사소송법 제40-6조에 명시된 기관: 중앙부패방지처

VI. 공공조달법상의 투명성 보장

1990년대에 프랑스의 공공조달 계약과 관련한 광범위한 부패스캔들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지방분권화 개혁 이후 레지옹(Région)에 권한이 이전된 고등학교 건설 및 수리보수와 관련하여 여·야의원, 지방의회 의장 등과 건설 회사들이 결탁하여 카르텔을 형성하였던 일-드-프랑스 부패사건 (*Affaire des marchés publics d'Île-de-France*)⁵¹⁾은 대표적 사례이다.

이후 공공조달에 관한 많은 입법적 변화가 있었는데, 2006년부터 시행된 공공조달법전 (*Code d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제1조 1항에 의해 “공공조달은 입찰권자(les pouvoirs adjudicateurs)와 공적 또는 사적의 경제사업자사이에 토목공사, 조달 또는 서비스를 체결하기 위해 유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 2조에는 입찰권자로 국가와 그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 존중(respect de la transparence)과 경쟁의 원칙(règles de concurrence)에 따라 공공조달에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지만 프랑스의 공공조달법전에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규정 (règles spécifiques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⁵²⁾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조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데 공공조달계약의 절차상 부패방지를 위한 3가지 사항이 열거되어있으며 모든 관련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⁵²⁾

51) Île-de-France 지역 내 471개의 학교 건물의 신축 및 유지, 보수. 공사계약금액의 약 2%가량이 정치인들에 흘러들어갔다. 47명의 부패연루자들이 기소되었으며 자크 시라크 당시 파리 시장의 오른팔이라 불리우던 미셸 지로(Michel GIRAUD) 의원도 연루되어 2005년 재판 결과 부패행위 처벌에 따라 4년의 징역형과 80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언론을 통하여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의 여행비자금사건으로 이어졌으며 시라크 대통령은 재직 중이던 2001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바도 있다.

52) [\(검색일자:2015년 8월10일\)](http://www.transparency-france.org/ewb_pages/l/les_marches_publics.php)

제 2 장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관련 법제

- 투명성 (La transparence) : 사업계획 공시의무, 사업범위 기술서의 명확한 작성, 최고입찰범위의 규정 및 최고입찰의 수용, 기업과의 협상과정에 대한 기록, 입찰자 선택의 이유
- 공공조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원칙 (Le principe de liberté d'accès à la commande publique)
- 입찰자의 동등한 처우 (L'égalité de traitement des candidats)

제 3 장 공직자의 부패행위 고찰

제 1 절 부패행위의 개념

I . 부패행위

부패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부패공여자(le corrupteur)와 매수자(le corrompu)에 의해 일어나며 부패행위는 공적 혹은 사적으로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어떤 행태를 통해 어떤 행위를 달성하거나 지연 혹은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안 또는 수뢰 및 양도받는 직접 혹은 간접적 행위 모두를 말한다.⁵³⁾ 프랑스 형법은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의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다.

1. 적극적 부패행위(la corruption active):

프랑스 형법 제433-1조에서 적극적 부패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연인 또는 법인, 누구든지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선거에 위하여 공무위임을 받은 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언제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중여, 선물, 이익 또는 이익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1. 재물의 수수, 요구 또는 이익의 약속의 목적이 공무의 수행 및 포기 와 관련된 경우
2. 특정대우, 직업, 시장 또는 여타의 유리한 결정을 얻게끔 공무자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한 경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프랑스 형법, 254면 참조>

53) Guide d'aide à la détection des opérations financières susceptibles d'être liées à la corruption, p.5.

2. 소극적 부패행위(*la corruption passive*)

소극적 부패행위는 형법 432-11조가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공무 위임을 받은 자가 법적 근거 없이 언제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중여, 선물, 이익을 청하거나 받아들인 경우 :

1. 재물의 수수, 요구 또는 이익의 약속의 목적이 공무의 수행 및 포기와 관련된 경우
2. 특정대우, 직업, 시장 또는 여타의 유리한 결정을 얻게끔 공무자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한 경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프랑스 형법, 250면 참조>

소극적 부패행위에는 부패행위의 영향력을 추구하지 않는 제의를 포함하고 있기에 “부패의 시도(*tentative de corruption*)”에 대한 개념으로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극적 부패행위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부패행위자의 부모나 법인의 친인척 등의 제3자도 행위자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제3자도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⁵⁴⁾

II. 영향력의 행사 (*Trafic d'influence*)

프랑스에서 정치인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1887년 있었던 훈장거래사건 (*trafic de décosations*)⁵⁵⁾을 들 수 있다.

54) 프랑스 형법 제321-1조.

55) 당시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 젤 그레비 (Jules GREVY)의 사위이며 상원의원이었던 다니엘 윌슨 (Daniel WILSON)이 프랑스 정부에서 수여하는 훈장을 뇌물을 받고 거래한 사건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에서 형법상 영향력 행사에 대한 1889년 7월 19일 법률⁵⁶⁾ 제정 이전에는 법원으로서는 영향력 행사에 대하여 단순한 사기죄(escroquerie)⁵⁷⁾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⁵⁸⁾

현행 프랑스 형법에서 영향력의 행사는 부폐행위와 달리 구별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부폐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폐행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⁵⁹⁾ 적극적 부폐행위와 소극적 부폐행위에 관한 조항 각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대우, 직업, 시장 또는 여타의 유리한 결정을 얻게끔 공무자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한다.⁶⁰⁾ 이에 비추어 보건데 단순한 금품을 수수하는 차원을 넘어 유·무상의 이익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판례나 법이론도 이를 넓게 해석하여 부정청탁을 이행하는 공직자의 영향력 행사에 의한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래 청탁행위의 실행을 약속하거나 동의 한 것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⁶¹⁾

제 2 절 부폐행위자의 범위

부폐행위자는 부폐행위의 실질적 구성요소(*élément matériel*)로서 앞서 설명한 적극적, 소극적 부폐행위에서 부폐매수자와 공여자를 그 당사

56) Loi du 19 juillet 1889 sur les dépenses ordinaires de l'instruction primaire publique et les traitements du personnel de ce service (JORF du 20 juillet 1889, p.3557)

57) 프랑스 형법 제 313-1조 : 사기라 함은 허위의 성명 또는 자격을 이용하거나 진실한 자격을 남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사술을 동원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을 기망하여 그 자 또는 제3자의 손해로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재산을 교부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채무이행 또는 채무의 면제를 승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프랑스 형법, 197면 참조)

58) CA Paris, 3 janv. 1888 : S. 1889, 2, p. 84 ; DP 1888, 2, p. 154. - CA Paris, 26 avr. 1888 : DP 1888, 2, p. 159 et sur pourvoi, Cass. crim., 28 juill. 1888 : Bull. crim., n° 256 ; S. 1889, 1, p. 185, note E. Villey. - Cass. crim., 6 janv. 1888 : Bull. crim., n° 6 ; S. 1889, 1, p. 185, note E. Villey ; DP 1888, 1, p. 92

59) 강홍진, “프랑스의 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4월, 23면.

60) Shailendrasingh LEELEEA et Christophe ROQUILLY, 앞의 책, pp.54-55.

61) 이유봉, 앞의 책, 153면 이하.

자로 한다.

1. 부패매수자(*le corrompu*)

적극적, 소극적 부패행위에 관한 형법의 조항에 근거하여 부패매수자는 공직을 수행하는 자(*personnes exerçant une fonction publique*)이다.⁶²⁾

(1) 공무원

형법의 부패행위에 대한 행위자로서 공무원은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공권력에 의해 임명되어지고 개인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공권력의 결정에 의해 속박된 사람을 말하며 행정명령에 의한 공무원, 세무공무원, 경찰관 등을 예로들 수 있다.

(2) 공공사무취급자

공권력에 의해 임명되어지지는 않지만 공익상 업무(*mission d'interet général*)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상공회의소의 임원, 공공시설법인 종사자, 공권력의 감독 하에 있는 행정관청의 청산인, 공공서비스의 위탁에 의한 통역가, 번역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선거에 의하여 공무 위임을 받은 자

의무든 아니든 선거권자에 의해 당선된 사람을 말하며 상원, 하원의 의원 및 지방선거로 공무를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4) 해외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원, 법관

프랑스 형법에서는 해외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원과 법관들의 부패행위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 적용하면서 특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62) Guide d'aide à la détection des opérations financières susceptibles d'être liées à la corruption, p.5.

전자는 외국의 선거를 통한 공무를 부여받은 자 또는 국제공공기구에서 공익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후자는 재판법정에 배석하는 모든 사법관, 법원서기, 중재인 등을 포함한다.

2. 부패공여자(le corrupteur)와 부패공여 행위

형법 제433-1조는 공직을 수행하는 자는 부패약정(pacte de corruption)⁶³⁾에 관해 자연인, 법인 모두를 포함하여 부패행위에 관련한 모든 부패행위에 대해 공여자로 다루고 있다.

형법은 제의, 약속, 증여, 선물, 직접 혹은 간접의 이익으로 부패공여자의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선의(bonne foi)의 당사자는 별칙 규정을 면할 수 있지만, 악의(mauvais foi)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2 - 형법상 부패에 관한 체계 및 관련 규정 >

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형법 체계	
적극적 부패	소극적 부패
개인 : 제433-1-1조 (부가형 : 제433-22조, 제433-23조) 법인 : 제433-25조	개인 : 제432-11조 (부가형 : 제432-17조)

법관직에서의 부패에 관한 형법 체계
적극적, 소극적 부패
개인 : 제434-9조 (부가형 : 제 434-47) 법인 : 제 434-47조

63) Guide d'aide à la détection des opérations financières susceptibles d'être liées à la corruption, p.6

제 3 장 공직자의 부패행위 고찰

국제재판소 법관직의 부패에 관한 형법 체계	
적극적 부패	소극적 부패
개인 : 제 435-9조 (부가형 : 제 435-14조) 법인 : 제 435-15조	개인 : 제 435-7조 (부가형 : 제 435-14조)

해외 또는 국제기관 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형법 체계	
적극적 부패	소극적 부패
개인 : 제435-3조 (부가형 : 제435-14조) 법인 : 제435-15조	개인 : 제435-1조 (부가형 : 제435-14조)

제 4 장 공직자 부패방지 추진체계

제 1 절 부패방지기관

프랑스의 부패방지에 관한 대표적 기관으로 중앙부패방지처를 들 수 있다. 직제상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그 설치는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일정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공직윤리위원회와 공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 공화국재판소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I . 중앙부패방지처

프랑스의 중앙부패방지처는 전기한 1993년 부패방지와 경제활동 및 공공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다. 그리고 동 법률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중앙부패방지처 설치에 관한 시행령인 1993년 2월 22일 데크레가 제정되었다(데크레 제93-232호).

중앙부패방지처는 적극적인 형태의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패행위, 공직자 혹은 개인의 수뢰 · 독직 · 불법적인 이득행위와 공개입찰상의 부정에 다른 평등권과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프랑스의 많은 독립행정청과(AAI)는 달리 중앙부패방지처는 사법법원의 법관들로 구성되는 점이 특기할 만한데, 형식적 이긴 하나 중앙부패방지처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점을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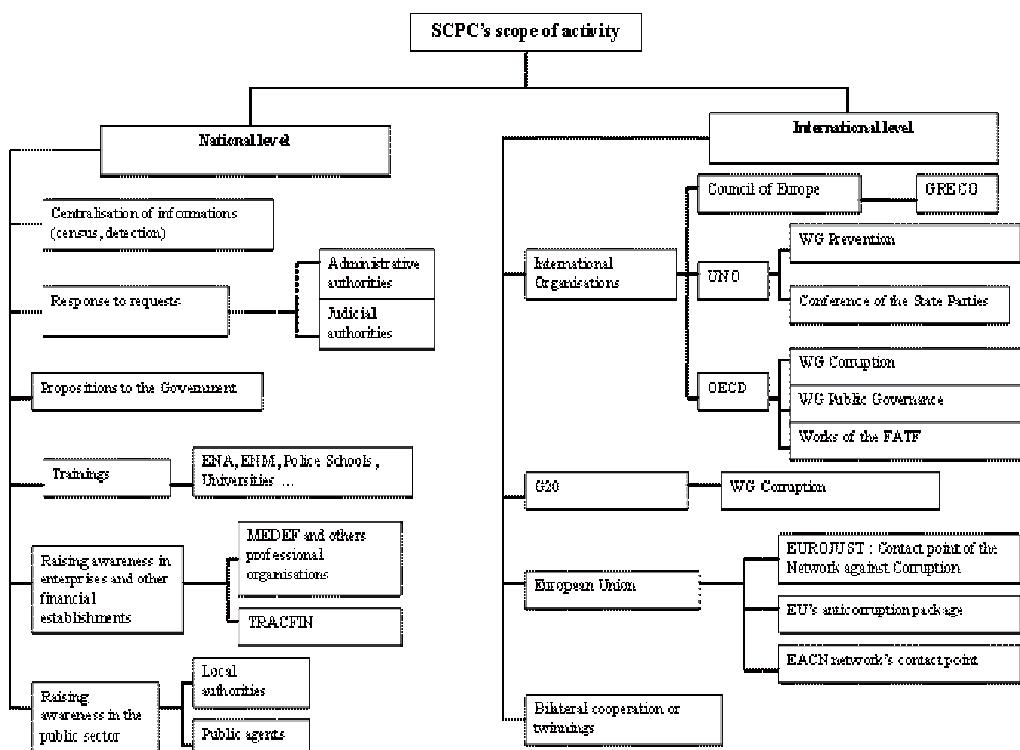
1. 조직의 구성

중앙부패방지처는 부처간 합동기관이며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권한과 일정한 독자성을 보장받고 있다. 중앙부패방지처는 각 국장(Chef du

제 4 장 공직자 부패방지 추진체계

service)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관, 사무장, 시설국장, 장다머리, 경찰위원, 세관부국장,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관, 조세검사관, 지방회계원 1급 위원, 2인의 법관, 행정법원 판사, 중앙행정기관 자문과, 공보관 등으로 구성된다.

< 그림1 - 중앙부패방지처의 활동범위 >



출처 : 프랑스 법무부 (Ministère de la Justice)⁶⁴⁾

64)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2015년 8월 10일자 검색)

<http://www.justice.gouv.fr/multilinguisme-12198/english-12200/the-central-service-for-the-prevention-of-corruption-24860.html>

2. 업무

(1) 부패관련정보의 종합화

중앙부패방지처는 부패와 관련한 정보의 종합화 기능을 수행한다. 민간 기업의 경영진이나 직원의 적극적인 향응제공이나 소극적인 혜택이나 기회제공에 관련된 부패행위의 조사와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익의 부당한 취득, 횡령, 정실인사행위, 부당한 압력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사법부와의 협력

중앙부패방지처는 사법당국(법원과 검찰)의 요청에 의해 진행 중인 재판에 정보제공을 하며 사법 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고 수사의 속도를 위해 부패에 관한 전문적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보좌할 수 있다. 중앙부패방지처에서 제공된 정보는 소송의 모든 당사자에게 접근권이 보장된다.⁶⁵⁾

(3) 부패예방조치의 의견제시

중앙부패방지처는 관련기관, 다시 말해,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 선출직 단체장, 재정관련 사법기관(회계원, 지방회계원)기타 행정위원회, 중앙정부의 조사·감독기관 등의 장이 요청한 부패예방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65)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Rapport pour l'année 2013, p.132 : 사법부와의 협력은 2012년 8건, 2013년 15건이며 이러한 증가는 고등법원 재판관(niveau des cours d'appel)을 대상으로 중앙부패방지처의 기능에 대한 지속적 연수와 교육의 결과이다

(4) 기타

중앙부패방지처는 그밖에도 공공기관, 그랑제꼴, 대학 등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동시에 외교부, UN, OECD, 유럽의회, IMF, 세계은행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의 표에서 본바와 같이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기구와의 공동작업과 협력업무를 수행한다.⁶⁶⁾ 아울러 부패방지 분야의 외국 대표, 기관과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⁶⁷⁾

II. 공직윤리위원회

공직윤리위원회(Commission de déontologie)의 설치는 중앙부패방지처와 마찬가지로 앞의 1993년 부패방지법에 의해 1995년에 설치되었으며 총리 산하의 기구이다. 공직의 현대화에 관한 2007년 2월 2일 제 2007-148호 법률⁶⁸⁾은 국가직, 지방직, 의료직으로 나뉘어 심사되던 체계를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1. 조직의 구성

조직의 구성은 꽁세이데타 (Conseil d'Etat)의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회계원의 선임재판관(le conseiller maître à la Cour des comptes), 현직 혹은 명예직 법관, 민간기업인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가직, 지

66) 유엔부패방지협약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contre la corruption) 제 6조 3항에 따라 프랑스의 부패방지기구로 중앙부패방지처가 지정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되어 있다.

67)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중앙부패방지처는 2011년 12월에 카메룬의 국가반부패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Anticorruption du Cameroun)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중앙부패처의 담당관이 조사기법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까탈루냐 반부정사무국(Office Anti-fraude de Catalogne)과 부패방지를 위한 상호 실무대응 정보 공유 협약에 서명하였다.

68) Loi n° 2007-148 du 2 février 2007 de modernisation de la fonction publique

방직, 의료직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권한 있는 심사위원 (*en qualité de membres de la formation spécialisée compétente*)으로 두고 있으며 연구법 (*Code de la recherche*) 제 413-8조의 적용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 심사위원 (전임 대학총장 등)을 두고 있다.

2. 업무

공직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당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영리활동과의 이해관계를 심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형법 제 432-13조에서 명시하는 금지되는 사적 영리활동에 대한 감시(*contrôle*)와 공직자의 창업 및 사업인수 신고에 대한 검토, 기업 또는 협회에서의 사적 활동 신고의 검토, 연구직 공무원과 민간기업간의 상호연구협력의 계약 체결 및 재계약 요청의 심사를 수행한다.

III. 공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

2013년 공직생활 투명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된 공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이하 HATVP)은 독립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직의무에서의 성실 의무를 증진하고 이해충돌의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⁶⁹⁾ HATVP의 설립은 공직 투명성에 관한 기능적 수행이 가능한 실질적인 발전이라고 평가받는다.⁷⁰⁾

69) 고등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hatvp.fr/> (검색일자: 2015년 8월 10일)

70) Rapport de Conformité Intérimaire sur la France, 2015년 3월 12일 유럽위원회 (*Conseil d'Europe*)보고서 참고.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RC3%282014%2929_2nd_Interim_France_FR.pdf (검색일자: 2015년 8월 10일)

1. 조직의 구성

공직 생활 투명성을 위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⁷¹⁾ 사무국장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임명되며⁷²⁾ 2인의 꽁세이데파(Conseil d'Etat)의 재판관, 2인의 파기원(Cour de cassation) 재판관, 2인의 회계원(Cour des comptes)의 임원, 하원(Assemblée nationale)과 상원(Sénat)의 장에 의해 임명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며 재임은 불가능하다.

2. 업무

법률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공직자 및 선출직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럽의회의 프랑스 대표)의 재산과 이익현황을 보고받아 검토 및 감독하며 공개한다(신고의무는 공직 생활 투명성에 관한 조직법률 제1조에 의해 의회에 적용이 되며, 일반법 제4, 제5조에 의해 장관에게 적용).⁷³⁾

정부의 각료 및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의 공직 윤리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하며 국가와 지방의 행정기능과 영리활동에 대한 적합성을 명시

71) 조직 구성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72) 공직 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2013년 12월 23일 데크레 제2013-1204호 (Décret n° 2013-1204 du 23 décembre 2013 relatif à l'organisation et au fonctionnement de la 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의 절차에 따라 파기원 검사(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였던 장-루이 나달(Jean-Louis NADAL)이 공화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초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73) 공직 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에 재산상황신고와 이익현황신고에 관한 2013년 12월 23일 데크레 제2013-1212호 (Décret n° 2013-1212 du 23 décembre 2013 relatif aux déclarations de situation patrimoniale et déclarations d'intérêts adressées à la 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직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hatvp.fr/>)에서 열람 가능하나 단,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제 4조에 의해 개정되어진 선거법 제 135-2조에서 예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신고자의 주소, 배우자, 동거인, 가족 구성원의 성명,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및 위치, 공동명의자의 성명 등).

한다. 공화국 대통령, 국무총리, 의회에 대한 고등 사무국의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해 충돌 당사자들에 대한 관련 법률 적용을 권고적 내용으로 명시할 수 있다.⁷⁴⁾

IV. 공화국재판소

1993년 헌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프랑스 공화국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는 정부구성원의 직무상 행위가 중죄나 경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다. 1993년 헌법 개정 전에는 탄핵재판소(Haute Cour de Justice)가 정부구성원의 중죄나 경죄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하였다.

현행 헌법 제10장은 공화국재판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 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과 하원이 각 동수로 참여하고 양원의 총선거 또는 개선 후 양원에서 선출된 12인의 의회 의원과 3인의 사법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 법관으로 구성된다. 재판소장은 파기원 법관 중 1인이 맡는다.

정부구성원의 직무상 행위가 중죄나 경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사위원회(Commission des requête)에 제소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파기원 검찰관(Procureur général près de la Cour de cassation)에게 이송을 명할 수 있다. 파기원 감찰관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구비하여 공화국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⁷⁵⁾

74) Thomas ACAR et Antonin GELBLAT,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Constitution) : Validation partielle des lois organique et ordinaire du 11 octobre 2013”, La Revue des Droits de l'Homme, Lettre « Actualités Droits-Libertés » du CREDOF, 21 octobre 2013.

75) 공화국재판소의 첫 번째 케이스로는 1985년 발생한 ‘AIDS감염혈액 공급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총리였던 파비우스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에르베 보건 장관에게는 유죄 및 형집행정지 판결을 선고하였다(전학선, 앞의 논문, 113면).

제 2 절 퇴직 공직자 및 겸직에 따른 부패행위의 방지

I. 퇴직 공직자의 부패방지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직윤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⁷⁶⁾ 원칙적 금지로는 3년간 민간 기업의 감시를 위한 업무 수행, 민간 기업과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해당 계약을 감독하는 업무 또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실행된 성과물을 관청에 제안하거나 이러한 성과물에 대한 의견을 공식화하여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에 대하여 해당 공직 업무수행을 임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민간 기업으로부터 자문 또는 금전에 관한 참여를 취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1. 감독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감독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1993년 1월 29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 공무 수행자와 공공시설의 공무 수행자, 내각 구성원, 지방행정청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자, 공중보건법상 명시⁷⁷⁾되어 있는 기관의 공법 또는 사법상의 계약적 공무원, 독립행정청의 계약적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공직 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⁷⁸⁾ 일시적 중단의 예로는 업무 대기 또는 무급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공직을 떠난 경우를 포함한다.⁷⁹⁾

76) 부패방지와 경제 및 공공절차상의 투명성에 관한 1993년 1월 29일 법률 제93-232호 제87조의 2.

77) 공중보건법전 (Code de la santé publique) : 제1142-22조, 제 1222-1조, 제1313-1조, 제 1413-2조, 제 1418-1조, 제 5311-1조.

78) 부패방지와 경제 및 공공절차상의 투명성에 관한 1993년 1월 29일 법률 제 93-122호 제87조의 1.

79)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윤리 감시 절차에 관한 2007년 10월 31일 시클래흐

2.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심사 절차 및 영향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민간기업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공직윤리위원회의 심사 의견은 필수적이다.

공무원의 퇴직 후 기업에서 공직 퇴직 전 3년간의 활동에 대하여 공직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심사에 대하여는 의무적 심사와 임의적 심사로 나뉘며 의무적 심사의 경우 아래의 각 경우에 해당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임의적 심사가 가능하다.⁸⁰⁾

(1) 의무적 심사와 임의적 심사

2007년 4월 26일 데크레⁸¹⁾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된 행정청에 사적 업무 수행을 원하는 경우 공직을 중단하기 1개월 전 서면으로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 후 15일 내로 윤리위원회에 심사 청구 요청한다. 공무원이 직접 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개월 전 서면으로 제출하며 소속된 행정청에도 심사 요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⁸²⁾ 임의적 심사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소속된 해당 행정청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감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⁸³⁾

(Circulaire du 31 octobre 2007 définissant les modalités de contrôle de déontologie applicables aux agents publics)

80) “Un agent public peut-il librement partir travailler dans le privé?” :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31219.xhtml>(검색일자: 2015년 8월 30일)

81)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공직을 중단한 공직자의 사적활동과 윤리위원회에 관한 2007년 4월 26일 데크레 제2007-611호 (Décret n°2007-611 du 26 avril 2007 relatif à l'exercice d'activités privées par des fonctionnaires ou agents non titulaires ayant cessé temporairement ou définitivement leurs fonctions et à la commission de déontologie)

82) 위의 데크레 제3조의 2.

83) 위의 데크레 제3조의 3.

(2) 심사 의견의 영향

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의견을 전달 받은 경우 해당 행정청은 공무원의 퇴직 요구에 반대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최초 의견을 확인한 후 1개월 내에 2차 의견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⁸⁴⁾ 유보사항이 있는 경우의 공무원 퇴직에 관해 공직 업무 중단 시부터 향후 3년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⁸⁵⁾

II. 공직자의 겸직 금지

프랑스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사적 활동으로 이익을 가지는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⁸⁶⁾ 의무에 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해직의 불이이익 가해진다.⁸⁷⁾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 해당 부처의 신고 혹은 허가를 얻어 사적 영역에서 겸직을 할 수 있다.

1. 정규직 공무원의 겸직(cumul d'activités d'un agent à temps complet)

(1) 정규직 공무원의 겸직 활동⁸⁸⁾

84) 앞의 데크레 제15조.

85) 앞의 데크레 제18조.

86)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25조

87) 관련 판결로는 Conseil d'État du 15 février 1999, req.n°190226; Décision N°03PA00861 de la Cour Administrative d'Appel de Marseille du 4 mars 2004; Décision N°02MA00455 de la Cour Administrative d'Appel de Marseille du 15 novembre 2005; Décision N°09BX02450 de la Cour Administrative d'Appel de Bordeaux du 28 septembre 2010 ; Décision N°09NC01852 de la Cour Administrative d'Appel de Nancy du 2 décembre 2010; Décision N°09MA03514 de la Cour Administrative d'Appel de Marseille du 24 février 2012; Arrêt N°355201 du Conseil d'État du 16 juillet 2014.

88) 정규직 공무원의 겸직에 관련한 법령조항은 art. 432-12 et 13 du Code Pénal; art. 25 Loi 83-634 du 13 juillet 1983; Loi n° 2007-148 du 2 février 2007 de modernisation de la fonction publique; Décret n°2007-611 du 26 avril 2007 relatif à l'exercice d'activités privées par des fonctionnaires ou agents non titulaires ayant cessé temporairement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자신의 공직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헌신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리적이건 비영리적이건 부수적 활동이 허락되어진다.⁸⁹⁾

1) 금지되는 사적 행위 (Activités privées interdites)

기업이나 협회에 책임 있는 기구의 참여 (공무원에 의한 기업 설립 또는 인수의 경우는 예외) 공공기관과 관련한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의 자문, 전문적 역할수행, 재판에서의 변호, 해당 기관의 감독 또는 관련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직접 또는 중계인을 통한 이익취득 행위는 금지되는 사적 행위이다.

2)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Activités librement autorisées)

공무원은 허가 없이 자산 운용, 저작권과 관련한 법규정을 준수하고 비밀 준수의 의무를 따르는 저작물의 발간 (문학, 사진 등)으로 인한 주식 및 이익의 소유, 공공기관과 사인을 위한 비영리 봉사활동, 교육 기관의 교사, 기술직, 예술 활동의 직무 특성상의 개인적 연습이나 훈련 등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ou définitivement leurs fonctions et à la commission de déontologie; Décret n°2007-658 du 2 mai 2007 relatif au cumul d'activités des fonctionnaires, des agents non titulaires de droit public et des ouvriers des établissements industriels de l'Etat ; Circulaire n° 215 7 du 11 mars 2008 relative au cumul d'activités 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modifiée, notamment son article 25, et du décret n° 2007-648 du 2 mai 2007 relatif au cumul d'activités des fonctionnaires, des agents non titulaires de droit public et des ouvriers des établissements industriels de l'Etat; Décret 2011-82 du 20 janvier 2011 modifiant le décret 2007-658 du 2 mai 2007 relatif au cumul d'activités des fonctionnaires, des agents non titulaires de droit public et des ouvriers des établissements industriels de l'Etat (Textes de référence :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648.xhtml>>) (검색일자:2015년 8월 30일)

89)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648.xhtml> (검색일자:2015년 8월 30일)

3) 허가를 요하는 행위 (Activités soumises à autorisation)

소규모 또는 일인회사에 의해 개인적 사업 및 공무원에 의해 생산된 재물의 판매는 허가를 요한다. 여기서 소규모 또는 일인회사는 사적 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가 공공기관에 반하지 않는 감정 또는 자문, 교육과 연수, 코치 및 공공교육의 범위의 스포츠 또는 문화적 활동, 가정에서의 소규모 작업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규모 회사에서 수행될 수 없는 활동으로 기업의 형태 이든 비기업적형태이든 민영 또는 상업적 회사 방식의 농장을 통한 농산물 경작활동, 수공예회사와 협업하는 활동, 친족, 동거인 또는 내연 관계자의 거주지에서의 조력활동,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기관 또는 사적기관에 대한 공익활동, 제한된 기간으로 국제협력의 공적 이익을 가진 공익상의 국제기구와 해외에서의 임무, 포도 수확 등은 제외된다.

4) 허가신청 (Demande d'autorisation)

허가에 따르는 부수적 활동을 고려하는 공직자는 등기 우편으로 공직자가 속한 행정청에 허가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허가 요청에는 활동이 수행되어질 곳의 고용주 또는 기관의 명칭, 활동의 성격, 기간, 정기성, 보수조건, 활동에 관한 기타 정보 등의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에 대하여 해당 행정청은 1개월 안에 허가의 일부를 전달하여야 하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2개월 안에 답변을 할 수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과 의료직 공무원은 허가신청에 앞서 소속된 행정청의 해당 위원회로 부처 겸직에 관한 사전의견을 필요로 한다. 행정청으로부터 최대 2개월간 답변이 없을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청서의 명시한 조건 또는 보수 등에 관련하여 상당한 변경이 있을시 공직자는 다시 허가 요청을 송부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공직가의 겸직에 관련하여 뒤따르는 이익이 허가 신청시와 상이하거나 허가사항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혹은 그 활동이 부수적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즉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창업 및 사업인수와 공직의 겸직 (*Cumul d'un emploi public avec la création ou la reprise d'entreprise*)

창업하거나 사업을 인수한 공직자는 새로운 사적 활동과 자신의 공직에 대하여 2년간 겸직할 수 있다. 겸직하는 기간 동안, 공직자는 일시적 근로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직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소속된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6) 기업 또는 협회의 대표직과 공직의 겸직 (*Cumul d'un emploi public avec la direction d'une société ou d'une association*)

공직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협회의 경영자와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입상한 사람, 계약직으로 고용된 사람은 사적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직자의 겸직은 최대 2년 동안 가능하다. 이후에 공직자는 다시 봉직하게 될 행정청에 추후계획을 신고해야하며 이 신고는 공직윤리위원회의 견해 청구에 반영된다.

7) 공직윤리위원회 견해청구 (*Saisine de la commission de déontologie*)

공직윤리위원회에 대한 견해청구에는 행정청의 보고서, 지난 3년간의 공직자의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 창업 및 인수, 추후 활동에 관한 신고서, 기업에 대한 설명, 기업에서의 공직자 임무 수행에 관하여 명시한다.

위원회는 견해청구 이후에 1개월 내에 의견을 제출하며 1개월이 지났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직자가 소속된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 비정규직 공직자의 겸직 (cumul d'activités d'un agent à temps non complet)⁹⁰⁾

법정 근로시간 (주당 24시간 30분)의 70% 이하를 근무하는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겸직에 관하여 비정규직 공직자도 정규직 공직자와 같은 규정을 따른다.

(1) 관련 공직자 (Agents concernés)

1) 국가공무원 Fonction publique d'État (FPE)

법정근로시간 대비 70% 또는 그 이하를 근무하는 고용자를 비정규직 고용자라고 하며 계약직으로만 규정된다.

2) 지방공무원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e (FPT)

법정근로시간 이하의 사무에 대한 계속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비정규직 고용자가 구성되며 공무원 또는 계약직으로 규정된다.

3) 의료직 공무원 Fonction publique hospitalière (FPH)

의료직 공무원의 비정규직 고용자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내용

법정 근로시간의 70% 이상인 경우 겸직에 관하여 비정규직 공직자도 정규직 공직자와 같은 규정을 받는다. 법정근로 시간의 70% 또는 이하를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계약직 고용자는 정규직공직자에게 명시된 부수적 활동과 모든 영리적 행위는 소속 행정청의 허가없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공직자는 겸직에 관하여 소속 행정

90)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7106.xhtml> (검색일자: 2015년 8월 30일)

제 2 절 퇴직 공직자 및 겸직에 따른 부패행위의 방지

청에 보고해야 하며 겸직활동이 공직자의 의무규정 반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 공직 수행과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손상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겸직에 따르는 사적 활동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다.

**< 표3 - 퇴직 공무원 및 공무원 겸직에 관한 시행령(2007년)으로
인한 공직윤리위원회의 의견제출현황 >**

국가 공무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출 건수	1014	874	1073	1228	1106	1038	1155	1075
증감 (%)	-14.7	-16	+22.8	+14.45	-9.93	-6.15	+11.27	-6.92

지방 공무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출 건수	957	834	1116	1730	1462	1391	1336	998
증감 (%)	+11.6	-8.71	+33.8	+55	-15	-4.8	-3.9	-25.4

의료 공무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출 건수	1847	326	363	428	746	945	995	972
증감 (%)	-40.38	-82.35	+11.34	+17.9	+74.3	+26.67	+5.29	-2.31

출처: 공직윤리위원회 2014년 보고서 (Rapport d'activité 2014 de la Commission de déontologie), 5면.

제 5 장 프랑스의 부패방지 처벌

제 1 절 개 요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은 그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야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형사사법제도는 소프트파워의 원천이자 국가경쟁력의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⁹¹⁾ 프랑스의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는 부패에 관한 처벌 및 처리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에 비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상당히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⁹²⁾

그러나 주목할 만 한 점은 최근 들어 프랑스는 입법노력으로 분야별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들이 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다는 것이다.⁹³⁾ 이러한 입법 활동은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 (*encore au milieu du chemin*)이라는 평가 또한 받고 있는 현실이다.⁹⁴⁾

프랑스 정부는 OECD의 권고(*recommandation*)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2007년 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행위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금융경제범죄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부패의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다.⁹⁵⁾

91) 김종민, 앞의 논문, 223면.

92) Jacqueline BOUTON, “Vers une généralisation du lanceur d’alerte en droit français”, RDT 2014, p.471.

93) Serge Slama, “Le lanceur d’alerte, une nouvelle figure du droit public?”, AJDA 2014, p.2229.

94)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를 보면 프랑스는 부패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의해 추후에 법이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Rapport 2013: Transparency de la vie publique et maintenant?, 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 p.20 . (http://www.transparency-france.org/e_upload/pdf/rapport2013_transparency_france_031213.pdf, 검색일자: 2015년 8월 10일)

이하에서는 프랑스 국내법령에 나타난 부패방지체계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퇴직공무원의 부패행위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부패행위자의 처벌

I. 부패행위자의 처벌

부패범죄의 척결과 예방을 위한 형사절차적 대응은 부패범죄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범죄방지를 위해 효과적이라는 점은 형사정책의 기본에 속하는 사실이다.⁹⁶⁾ 또한 법 규정과 같은 공식적 제도가 제도로서 의미를 갖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엄정한 법집행이다. 부패행위와 관련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사법당국에 의한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처벌이다.⁹⁷⁾ 그리고 형 집행 단계에서도 엄격성과 확실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돈과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수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에 대한 형 집행 과정에 대하여는 소홀하였던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⁹⁸⁾

프랑스에서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의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법 및 가족법이 금지하는 공민권 금지, 판결공표, 청탁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95) France au Rapport anticorruption de l'UE (Annex 10), p.2

(http://ec.europa.eu/dgs/home-affairs/what-we-do/policies/organized-crime-and-human-traffic-king/corruption/anti-corruption-report/docs/2014_acr_france_chapter_fr.pdf, 검색일자: 2015년 8월 10일)

96) 류전철, “부패범죄의 척결과 예방을 위한 형사절차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비교형사법학회, 2011, 835면.

97) 최순영, 최진욱,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 연구총서07-08-02, 한국형사정책연구 연구원, 2007, 92면.

98) 김현수, “부패방지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제20권 제1호, 법과 정책, 2014, 229면.

활동 금지 등의 부가형이 가능하다. 또한 공직 퇴직 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영리행위자 처벌 규정이 있다.

1. 주된 형벌(peine principale)

공적영역에서 형법상 명시하는 부폐행위를 범하는 경우에 공무원, 법관, 해외 및 국제기구 공무원을 비롯하여 부폐행위의 당사자에게 구금형과 벌금형이 가해진다. 또한 “부폐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의 최대 2배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조세범죄와 대형 금융경제범죄에 관한 2013년 12월 6일 법률로 인하여 형법의 개정을 가져왔으며 “기존의 부폐행위에 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기에 이르렀다.⁹⁹⁾

99) 김종민, 앞의 논문, 210면.

	종 전	개정후
공금횡령 (형법 432-10조)		
불법적 이익취득 (형법 432-12조)		
직권남용 개인 (형법 433-2조) 사법종사자 (형법 434-9-1조) 국제공공기구 종사자 (형법 435-2조, 435-4조) 국제사법기구 종사자 (형법 435-8조, 435-10조)	5년 이하 구금형 및 75,000 유로 (1억 1,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구금형 및 50만 유로 (6억 7,000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 2배까지 가능
부폐 민간 부문 (형법 445-1조, 445-2조) 체육 관련 (형법 445-1-1조, 445-2-1조)		
직권남용 및 부폐 국내 공무원 (형법 432-11조, 433-1조)		
부폐 사법종사자 (형법 434-9조) 외국 공무원 (형법 435-1조, 435-3조) 해외 또는 국제사법기관 (형법 435-7조, 435-9조)	10년 이하 구금형 및 15만 유로 (2억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구금형 및 100만 유로 (13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범죄 수익 2배까지 가능
공공재산유용 (형법 432-15조)		
부당한 특혜제공 (형법 432-14조)	2년 이하 구금형 및 3만 유로 (4,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구금형 및 20만 유로 (2억 7,000만원) 이하 벌금. 범죄 수익 2배까지 가능

2. 부가형(peine complémentaire)

부가형은 형법상 처벌을 더하여 법률상 재판에 의하여 부과되어 지는 징벌로써 형법 제131-10조¹⁰⁰⁾에 근거하여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 형법에서는 부폐행위자에 따라 그 부가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공무원의 적극적 부폐행위

형법 제 433-22조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범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그 공무 또는 직업 · 사회활동에 대한 10년 이하의 수행금지;
3. 제131-3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른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형법 제 433-23조

제433-1조, 제433-2조 및 제433-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범죄행위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 또는 물품의 몫수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프랑스 형법, 262-263면 참조>

(2) 공무원의 소극적 부폐행위

형법 제 433-17조

공공기관이 정하는 직업에 붙여진 칭호나 공인자격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여요인이 정하여지는 자격을 법적근거 없이 사용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프랑스 형법, 260면 참조>

100) 형법 제131-10조 : 법률에 규정된 경우 중죄나 경죄에 대하여 하나 또는 수개의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자연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부가형에는 금지, 실권, 권리무능력 또는 권리의 취소, 치료 또는 의무부과 명령, 물건의 이동금지 또는 몫수, 동물의 몫수, 영업소의 폐쇄, 언론매체 또는 기타 모든 전기통신매체에 의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프랑스 형법, 28면 참조)

(3) 법관의 적극적, 소극적 부폐행위

형법 제 434-44조

제434-4조 내지 제434-9-1조, 제434-11조, 제434-13조 내지 제434-15조, 제434-17조 내지 제434-23조, 제434-27조, 제434-29조, 제434-30조, 제434-32조, 제434-33조, 제434-35조, 제434-36조 및 제434-40조 내지 제434-43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131-26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434-9조, 제434-9-1조, 제434-16조 및 434-2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31-3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공무 또는 직업 · 사회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제434-9조, 제434-9-1조, 제434-33조 및 제434-3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공무 또는 직업 · 사회활동의 수행금지를 명할 수 있다.

본장의 죄를 범한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명할 수 있다.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프랑스 형법, 279-280면 참조>

(4) 해외 및 국제기구 공무원의 적극적, 소극적 부폐행위

형법 제 435-14조

본장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를 범한 자연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부가형을 선고한다.

1. 권리행사를 규정한 제131-26조의 방식에 따른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의 금지 ;
2. 5년 이내의 공무담당 또는 범죄와 관련되었던 직업적, 사회적 활동의 금지;
3. 제131-35조에 의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
4. 제131-21조의 방식에 따른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되도록 정해진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본장에 규정한 범죄 중 하나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제131-30조 내지 131-30-2조에 따른 영구적 또는 10년 이내의 프랑스 영토 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프랑스 형법, 287면 참조>

II. 퇴직 후 영리 행위자의 처벌

2013년 공직생활 투명성에 관한 법률(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 2013-907호) 제 20조로 인하여 프랑스 형법 제 432-13조에 정부 각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포함됨으로 공직 퇴직 후 영리행위자¹⁰¹⁾의 범위가 더 구체화되었으며 처벌에 관한 기소권이 강화되었다.¹⁰²⁾

형법 제 432-13조

1. 민간기업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 민간기업과의 계약체결 업무,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의견표명 업무를 담당하였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정부 각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 행정부의 공직자,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종료 후 3년 이내에 관계 민간기업에 대한 용역, 자문 및 자금의 제공행위를 하거나 이를 승낙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위반금액의 최대 2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민간기업과 자본의 30% 이상을 공유하거나 전항의 민간기업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독점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 용역, 자문 및 자금 등에 관여하는 행위 역시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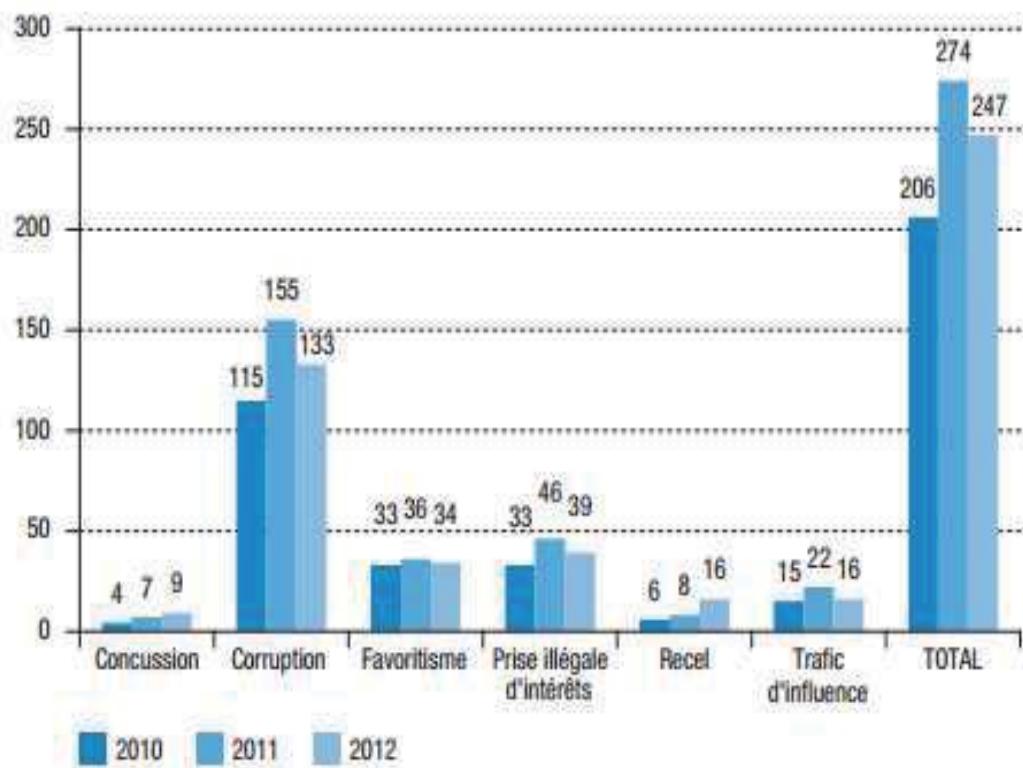
101) 프랑스에서 공직을 떠나 민간 기업으로 옮기는 이직에 대하여 “pantoufage” 또는 “essaimage”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102) Exposé des motifs :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LoiPubliee.do;jsessionid=51F79014C65A422BD28CAD868E11A019.tpdjo05v_1?idDocument=JORFDOLE000027354777&type=expose&typeLoi=&legislature="](http://www.legifrance.gouv.fr/affichLoiPubliee.do;jsessionid=51F79014C65A422BD28CAD868E11A019.tpdjo05v_1?idDocument=JORFDOLE000027354777&type=expose&typeLoi=&legislature=), 검색일자:2015년 8월 30일)

3. 사법(私法)원리에 따라 경쟁적 부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공기업은 본조의 민간 기업으로 간주한다.
4. 전 3항의 규정은 공공영조물, 국유기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혼합경제회사의 임원 그리고 우편 및 프랑스텔레콤의 공공 서비스 분야의 조직에 관한 1990년 7월 2일자 법률 제90-568호에 규정된 공공 사업주에 적용한다.
5.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자본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자본이 상속에 의하여 승계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프랑스 형법, 252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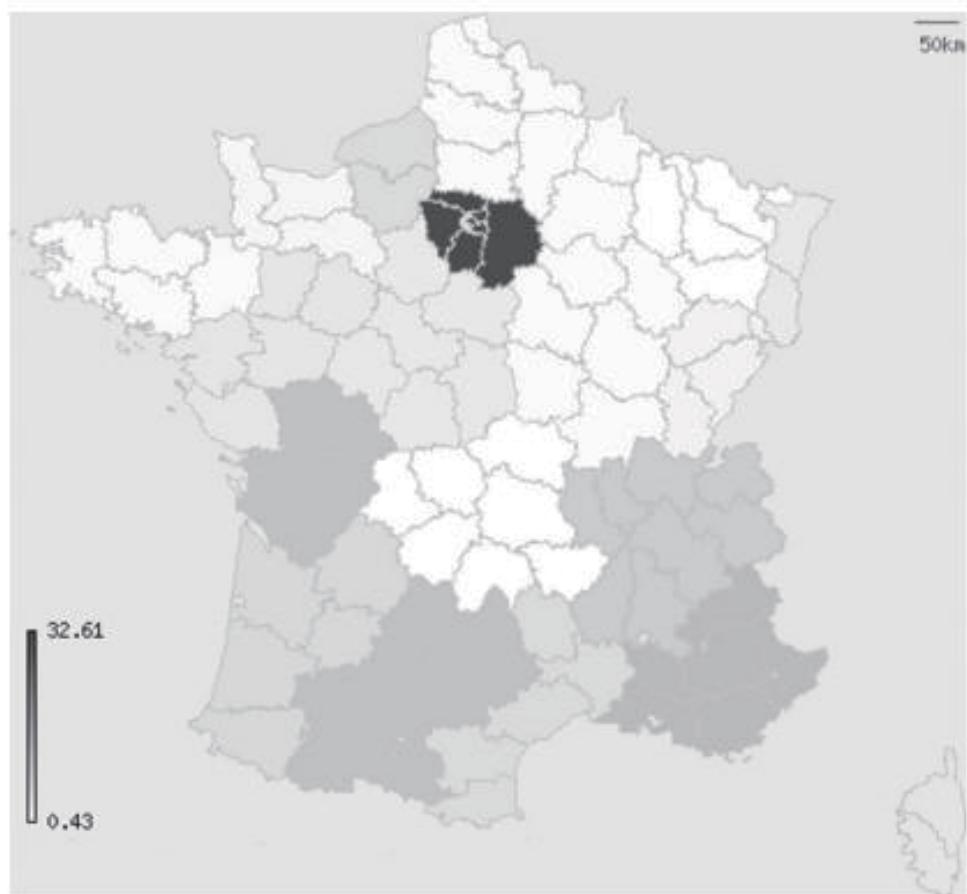
< 그림2 - 공직윤리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건수 >



출처 : 중앙부패방지처 2013년 보고서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Rapport pour l'année 2013), 27면.

제 5 장 프랑스의 부패방지 처벌

< 그림3 - 공직윤리에 반하는 범죄발생에 대한 프랑스 지역 비교
(région에 따라 %로 표기)>



출처 : 중앙부패방지처 2013년 보고서((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Rapport pour l'année 2013), 25면.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부패는 내용, 범위 및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고,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부패의 다양성 때문에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¹⁰³⁾ 프랑스어로 투명성을 뜻하는 “La transparence”는 “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이라고 정의 되는데 행정과 관련하여서 투명성은 공직자의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내부 감시 조직이거나 국민과 시민사회가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를 목적으로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⁰⁴⁾ 반부패 또는 부패방지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이자 재론을 요하지 아니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권력 내지 권한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그 위험은 상존하므로 반부패 문화의 형성은 물론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¹⁰⁵⁾

부패방지를 통한 정의 구현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전문)”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헌법전문)”하는 일이다.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공직 담당자의 직업적 윤리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198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고,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에서는 행정입법으로 새로운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

103) 이영균,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3호, 2004.9, 198면.

104)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Rapport pour l'année 2013, p.181.

105) 김현수, 앞의 논문, 210면.

이다. 이와 더불어 부패방지법과 공직생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이 최근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형법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범위를 국내와 국외의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위 공직자 또는 의회의 구성원들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기에 공직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이를 사후에 처벌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공직자가 업무 중 자신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갈등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더 필요할 것이다.¹⁰⁶⁾

한편 개별적 사항에 관한 우리 법제와의 비교검토의 경우 앞서 상술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조망 할 수 있도록 부록에서 표로 정리하였다.

제 2 절 시사점

행정학에서는 부패현상이 사회구조의 전체에 확산되어 있는 상태의 국가사회를 ‘부패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부패현상이 마치 공직자이나 일반시민이나 할 것 없이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라 할 만큼 심각하게 그들의 삶의 가치와 생활양식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부패문화국가’(Republic of Total Culture of Corruption)라고 정의하기도 한다.¹⁰⁷⁾

부패행위는 한국의 사회공동체를 민주적 조직체로 법제화함에 장애가 되는 전근대적 문화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전근대적 부패문화를 타파하는 일이야 말려 우리의 사회공동체를 근대적으로 탈바꿈하는 제1의 과제임을 우리 헌법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¹⁰⁸⁾

106) 박홍식,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2008 가을), 240면.

107)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사, 2001, 478면.

108) 강경근, “부패방지의 법제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제11집,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3, 23-24면.

부패에 대한 프랑스인의 인식과 관련하여 2014년 1월 시행된 르몽드지 (Le Monde)와 Ipsos의 합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65%가 프랑스 남녀 정치인 모두가 부패했다고 답하였으며 85%의 응답자는 남성 정치인들 모두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답하고 있다.¹⁰⁹⁾

현재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는 800,000개에 달하는 사회단체 (93%가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운영됨), 민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한 유령직원의 위장 취업, 다양한 형태로 위장된 비용의 지출, 개인적 공금 착복 등의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¹¹⁰⁾ 이와 같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공사업 계약 총가액의 15% (약 200억 유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TI)는 프랑스 대선 후보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공적 활동의 윤리 강화를 위한 7가지 제안 (7 propositions pour renforcer l'éthique de l'action publique)”을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¹¹¹⁾

공적 활동의 윤리 강화를 위한 7가지 제안

1. 선출직 공직자 재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
2. 현 시점부터 재임 중 겸직 원천 금지
3. 공공조달계약,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에서 이해충돌방지
4. 이해당사자간의 투명성 확보
5.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교육
6.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증명
7. 지방자치단체 정보 공개

109) http://www.franceinter.fr/sites/default/files/2014/01/20/821768/fichiers/Barom%C3%A8tre%20nouvelles%20fractures_2014%20vDEF.pdf (검색일자:2015년 8월 10일)

110) 강홍진, 앞의 글(2012), 22면 이하.

111) http://www.transparency-france.org/ewb_pages/div/Rapport_NIS.php (검색일자:2015년 8월 10일). 권고사항에 대하여 국제투명성기구는 2013년 법률로 HATVP 설치 및 공직자재산공개제도 도입, 이해충돌 관리 조항 신설, 2017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 공직자, 상원의원, 유럽의회 의원의 임기 중 겸직 금지에 관한 2014년 2월 14일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에 대하여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제 6 장 결 론

유럽연합집행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의 2014년도 반부패 보고서(Rapport anticorruption)에 의하면 프랑스는 일련의 법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특별계획 (stratégie nationale spéciale)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¹¹²⁾

하지만 2013년 법률에 의해 재산공개가 시행되고 있고 이해충돌에 관한 명문규정이 도입되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한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 근절의 노력은 우리에게 충분히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또한 프랑스의 중앙부패방지처의 역할 중 국제기관과의 협력 관계는 글로벌화 되어가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의 대응과 부패방지기관의 국제적 위상 확보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112) France au Rapport anticorruption de l'UE (Annex 10), p.1.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경근, “부패방지의 법제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제11집, 아세아 태평양공법학회, 2003
- 강홍진, “프랑스 공무원의 준수 의무와 제재 규정”,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9년 7월
- _____, “프랑스의 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법제 연구원, 2012년 4월
-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사, 2001
- 김종민, “프랑스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 개혁에 관한 소고”, 법조 2014, 12, vol. 699
- 류전철, “부패범죄의 척결과 예방을 위한 형사절차상 대응방안”, 비교 형사법연구, 제 13권 제2호, 비교형사법학회, 2011
- 박홍식,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적 · 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 서원석,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4
- 안상욱, “OECD 뇌물방지협약과 프랑스 정책”,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 발표논문집, 2012
- 유원기, “공직 윤리와 공직자의 역할 : 공직윤리 왜 필요한가”, 공공 정책, 2013. 7
- 윤광재, “각국 부패현황 및 대책: 유럽사례 -영국 · 프랑스 ·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

참 고 문 헌

- 이영균,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3호, 2004.9
-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안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이혜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논의에
관하여”,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4.7.14.
- 전학선, 프랑스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한국법제연구원, 2003
- _____, “프랑스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공법학연구, 2008년 제9권 제 3호
- 조규범, “국가청렴도 실태와 반부패 ·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4.1.6.
- 최순영, 최진욱,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 연구총서07-08-02,
한국형사정책연구연구원, 2007
- 홍완식,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4
- 법무부, 프랑스 형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외국문헌

- Jacqueline BOUTON, “Vers une généralisation du lanceur d’alerte en droit français”, RDT 2014, p.471
- Jean-Marc SAUVE, “La prévention des conflits d’intérêts et l’alerte éthique”, AJDA 2014, p.2249

Serge Slama, “Le lanceur d’alerte, une nouvelle figure du droit public?”, AJDA 2014, p.2229

Shailendrasingh LEELEEA et Christophe ROQUILLY, Lutte anti-corruption: Gestion des risques et compliance, Lamy, 2013

Thomas ACAR et Antonin GELBLAT,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Constitution) : Validation partielle des lois organique et ordinaire du 11 octobre 2013”, La Revue des Droits de l’Homme, Lettre « Actualités Droits-Libertés » du CREDOF, 21 octobre 2013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Rapport pour l’année 2013
_____, Guide d’aide à la détection des opérations financières susceptibles d’être liées à la corruption, 2014

Le rôle du SCPC et de la HATVP en matière de lanceurs d’alerte, Colloque TI France - Fondation Sciences citoyennes: Lanceurs d’alerte. La sécurisation des canaux et des procédures, Assemblée Nationale, 4 février 2015

Commission européenne, France au Rapport anticorruption de l’UE (Annex 10), 2014

Rapport d’activité 2014 de la Commission de déontologie du Ministère de la décentralis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sur l’accès des agents publics au secteur privé

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 Rapport 2013: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et maintenant?

웹사이트

Conseil de l'Europe (2015년 8월 10일 검색)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default_FR.asp>
<http://www.coe.int/t/dghl/monitoring/greco/evaluations/round3/GrecoRC3%282014%2929_2nd_Interim_France_FR.pdf>
<<http://conventions.coe.int/Treaty/FR/Treaties/Html/173.htm>>
<<http://conventions.coe.int/Treaty/FR/Treaties/Html/174.htm>>

Conseil d'État (2015년 8월 10일 검색)

<<http://www.conseil-etat.fr/Decisions-Avis-Publications/Avis/Selection-des-avis-faisant-l-objet-d-une-communication-particuliere/Deontologie-droits-et-obligations-des-fonctionnaires>>

Portail de la Fonction Publique (2015년 8월 10일 검색)

<http://www.fonction-publique.gouv.fr/files/files/statut_et_remunerations/statut_general/pdf/deontologie-projet-de-loi.pdf>

France inter (2015년 8월 10일 검색)

<http://www.franceinter.fr/sites/default/files/2014/01/20/821768/fichiers/Barom%C3%A8tre%20nouvelles%20fractures_2014%20vDEF.pdf>

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2015년 8월 30일
검색) <<http://www.hatvp.fr/>>

Le ministère de la Justice (2015년 8월 10일 검색)

<<http://www.justice.gouv.fr/multilinguisme-12198/english-12200/the-central-service-for-the-prevention-of-corruption-24860.html>>

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 (2015년 8월 10일 검색)

<http://www.transparency-france.org/e_upload/pdf/llt23.pdf>

<http://www.transparency-france.org/ewb_pages/l/les_marches_publis.php>

Le site officiel de l'administration français (2015년 8월 30일 검색)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648.xhtml>>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7106.xhtml>>

Legifrance :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2015년 8월 30일 검색)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LoiPubliee.do;jsessionid=51F79014C65A422BD28CAD868E11A019.tpdjo05v_1?idDocument=JORFDOLE000027354777&type=expose&typeLoi=&legislature>

L'Express (2015년 8월 30일 검색)

<http://www.lexpress.fr/actualite/politique/transparence-apres-des-mois-de-discussions-l-assemblee-va-adopter-la-loi-cahuzac_1279279.html#OTH6UkxpvlbbfTK3.99>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법체계 (행정법, 형법, 강령 등)	- 행정법 - 형법 - 강령	- 연방형법 - 개별 부패 방지법 - 공무원 윤리강령	- 행정법 - 형법 - 행동강령	- 행동강령 - 형법 - 행정법	- (형식적) 부폐방지법 - 행정규칙, 가이드라인], 지침 등	- 행정법 - 형법 - 강령(장관, 공무원)	- 부폐방지법 - 형법 - 강령(장관, 공무원)	- 행정법 - 형법 - 훈령 등 규칙
주요 법령	- 이해충돌법 - 공직신고자 보호법 - 로비법 - 공공부문 강령	- 연방형법 (뇌물죄, 이해충돌 방지규정)	- 연방공무원 법 - 형법 - 단체 책임법	- 장관행동 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 연방법 - 주법 - 행정규칙	- 부폐방지법 - 공직생활 투명성법	- 부폐방지법 - 국가공무원 법	- 국가공직자 윤리법 - 국가공직자 윤리규정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공직자	- 연방의원 - 공무원 (일반공무원, 보고대상 공무원) - 공직자	- 공무원 및 고용인 - 하원의원 - 공무원으로 선출, 지명 되거나 천거 된 사실이 통보된 자	- 공직자 (형법) - 공무원 (연방공무 원법)	- 정무직 공직자 - 직업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공직자 담당자 - 공직 고용자 - 교육생	- 공직자 (국내, 국외, 법관)	- 공무원 - 공무원, 의원을 포함 한 모든 공직자 및 공공단체, 법인 등 포함	-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법)
공직자 외 범위						- 배우자 - 가족(친척) - 자녀 - 가족	- 배우자 - 가족(친척) - 이해관계자 - 제3자	- 이해관계인 - 제3자 - 제3자 (주식 기타 증권보유 신고/내물죄 적용) - 직원대리인 등과소속기업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금품 등 (유형/가액)	- 원칙적 금지 - 선물 기타 이익 - 200달러	- 주별 차이 - 소액의 사소한 선물 - 100유로	- 원칙적 금지 - 장관 : 140 파운드 이하 - 하원 : 650 파운드 - 상원 : 500 파운드	- 원칙적 금지 - 연방 : 25 유로	- 원칙적 금지 - 장관 행동 관리자침 고려	- 교육기관 에서의 강연 (허가 없이 가능) - 기타의 경우 소속기관의 허가요함	- 직무관련성 금지(선물 및 사례수금지) - 소속기관 장의 허가 - 출연 등에 대하여 윤리 감독관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가능	
외부장의, 장연	- 특별규정X	- 원칙적 금지 - 제공된 공무 서비스와 직접적 연관 이 있는 경우에 적용	- 부수적인 행위로 가능 (신고 및 허가 사항) - 선출직 공직 자의 부수 적인 수입 공개	- 공무원 행동 관리자침 고려	- 교육기관 에서의 강연 (허가 없이 가능) - 기타의 경우 소속기관의 허가요함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퇴직 후 취업 (대상/기준)	- 전체 전직 공무원(1년) - 전직 보고 대상 공무원 (2년)	- 퇴직한 모든 공무원 - 직접 또는 상당히 관여 했던 사안	- 퇴직 후 6개월 유예 - 직위 또는 직무관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법인에 활동 금지 - 60세 미만 후직공직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 부여	- 공무원 행동 관리지침 - 공무원 영리 활동 및 직무관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법인에 활동 금지 - 이익충돌 금지규정 - 공무원 행동 관리지침	- 퇴직 후 취업 가능 - 경우에 따라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감독	- 특별 규정X	- 국가공무원법	
로비	- 로비법: 로비 로비스트 등록	- 로비법: 로비 로비스트 등록, 로비 활동 공개		- 이익충돌 금지규정 - 공무원 행동 관리지침 따른 벌금. 로비스트 보수에 대한 징시상 규제	- 특별 규정X - 주의회 규칙 으로 로비 스트 등록 2개주 시행 - Brandenburg 와 Rheinland - Pfalz	- 특별 규정X	- 특별 규정X	- 특별 규정X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 공직자 신고 보호법	- 내부고발자 보호법:내부 고발 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대상, 방식)	- 웹상에서 익명의 공익신고서 스템 구축 내부고발자 보복금지 및 징계	- 공익정보 공개법 (1998) - 근로자 노동재판소의 재판을 통한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센터 (함부르크) - 공익신고 보호관 (베를린)	- 공직 생활 투명성법 - 일체의 소송 절차에서 증인, 참고인 등으로 하기 되지 않음 - 일체의 소송 절차 진술 의무 없음 - 법원은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노출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공익통보자 보호법 - 신고대상: 개인의 생명· 신체보호·환경 보전·소비자 이익의옹호 - 신고방식: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원칙적 으로 익명으 로는 불가능	- 일체의 소송 절차에서 증인, 참고인 등으로 하기 되지 않음 - 신고대상: 개인의 생명· 신체보호·환경 보전·소비자 이익의옹호 -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원칙적 으로 익명으 로는 불가능
- 형벌:징역 벌금, 물수 - 내부징계	- 형벌:징역, 벌금, 물수 - 민사처벌: 부당이득 반환	- 형벌: 징역, 벌금, 물수 - 내부징계	- 형벌: 징역, 벌금, 물수 - 내부징계 - 연금정지 (퇴직자)	- 형벌 - 부과형 가눙 - 행정벌 - 내부징계	- 형벌 제재 - 행정적 제재 - 내부징계	- 형벌 - 행정적 제재 - 내부징계	- 형벌 - 행정적 제재 - 내부징계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주요 조직	-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 로비위원회 - 재무위원회 - 왕립기마경찰대	- FBI - 정부윤리청 - 법무부 - 감찰국 - 특별심사청	- 경찰 - 경제범죄 및 부패 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 - 연방부패 - 행위 예방 및 방지 청 - 회계감사원	- 공무원인 - 왕립검찰청 - 중대부정 수사청 - 국가회계 감사원 - 감사위원회 - 공공회계 - 감사위원회	- 연방·내무부, 연방법죄청 - 주. 각 주의 상황에 맞는 조직 - 투명성고등사무국	- 중앙부페 - 방지처 - 공직자윤리 - 위원회 - 사무국	- 부패 행위 조사국	- 국가·공직자 윤리심사회 - 윤리감독관
	- 조사 - 수사 - 기소요청	- 조사 - 수사 - 기소요청	-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 - 비밀유지 - 의무 면제 - 진술거부권 제한	- 조사 - 검·경·회계 -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수사, 기소	- 정보수집 및 제공 - 감독 - 기소권한은 없음	- 조사 - 수사 - 체포권	- 조사 - 수사 - 체포권	
	- 조사 - 수사 - 기소요청	- 조사 - 수사 - 기소요청	-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 - 비밀유지 - 의무 면제 - 진술거부권 제한	- 조사 - 검·경·회계 -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수사, 기소	- 정보수집 및 제공 - 감독 - 기소권한은 없음	- 조사 - 수사 - 체포권	- 조사 - 수사 - 체포권	
	- 조사 - 수사 - 기소요청	- 조사 - 수사 - 기소요청	-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 - 비밀유지 - 의무 면제 - 진술거부권 제한	- 조사 - 검·경·회계 -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수사, 기소	- 정보수집 및 제공 - 감독 - 기소권한은 없음	- 조사 - 수사 - 체포권	- 조사 - 수사 - 체포권	
	- 조사 - 수사 - 기소요청	- 조사 - 수사 - 기소요청	-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 - 비밀유지 - 의무 면제 - 진술거부권 제한	- 조사 - 검·경·회계 -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수사, 기소	- 정보수집 및 제공 - 감독 - 기소권한은 없음	- 조사 - 수사 - 체포권	- 조사 - 수사 - 체포권	
	- 조사 - 수사 - 기소요청	- 조사 - 수사 - 기소요청	-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 - 비밀유지 - 의무 면제 - 진술거부권 제한	- 조사 - 검·경·회계 -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수사, 기소	- 정보수집 및 제공 - 감독 - 기소권한은 없음	- 조사 - 수사 - 체포권	- 조사 - 수사 - 체포권	